

창원지방법원 2024. 9. 24 선고 2022가단11365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봉균

피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형모

변론 종결2024. 8. 13.

판결 선고2024. 9. 24.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B(주민등록번호 1 생략)와 피고 사이에 2021. 5. 21. 체결된 재산분할약정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B에게 창원지방법원 2021. 5. 24. 접수 제271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로부터 보증의뢰를 받고, B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였으며, B는 원고의 보증에 따라 C은행, 중소기업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뒤 운영자금을 대출받았다.

2013. 6. 21.	D	161,500,000	2022. 6. 10.	C은행
2019. 7. 19.	E	88,000,000	2022. 7. 15.	중소기업은행

나. B는 대출을 받은 이후, 2020. 11. 11.경 세무서 압류, 2021. 3. 19.경 가압류 등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금융기관의 이행청구에 따라 대출원금 246,789,513원 및 이자 4,719,533원 합계 251,509,04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022. 5. 27.	D	161,500,000	2,962,263	164,462,263	C은행
2022. 5. 26.	E	85,289,513	1,757,270	87,046,783	중소기업은행
합 계		246,789,513	4,719,533	251,509,046	

다.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처인 피고와 사이에 2021. 5. 21.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2021. 5. 24. 창원지방법원 접수 제2711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B와 피고는 2019. 9. 19. 협의이혼확인을 하였다(이 법원 2019호협997).

마. B와 피고는 2019. 7. 29. 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공증인가 창원법무법인 2019년 제1657호), B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F외 7개 필지(F, G, H, I, J, K, L, M)를 매도하여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바. 위 재산분할 당시 B의 재산상태는 다음과 같다.

적극재산	이 사건 부동산	153,000,000	2021. 5. 21. 재산분할로 처분
F외 1	145,000,000	2021. 5. 22. 매매로 처분	
I외 1	300,000,000	2021. 4. 23. 매매로 처분	
M	200,000,000	2021. 7. 28. 매매로 처분	
N	200,000,000	2021. 8. 9. 매매로 처분	
G	160,000,000	2021. 5. 22. 매매로 처분	
소계	1,158,000,000		
소극재산	C은행	200,000,000	원고의 보증부대출 180,000,000원을 포함한 대출금
기업은행	110,000,000	원고의 보증부대출 88,000,000원을 포함한 대출금	
○조합	607,000,000		
창원세무서 P	37,492,180 23,492,180	2022. 9. 14.자 창원세무서 회신서 참조 가압류권자(갑 제4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주)Q	74,000,000	근저당권자(갑 제4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소계	1,051,984,360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의창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창원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O조합, R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피고는, B가 2019. 9.경 재산분할약정을 지키지 아니하다가 2021. 5.경에 이르러 이 사건 부동산을 대신 넘겨주겠다고 하여, 1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2019. 7. 29. 당시의 재산분할약정인데, 그 당시에는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2021. 5. 21.의 재산분할약정이고, 2019. 7. 29. 당시 재산분할약정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지도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2021. 5. 21. 당시는 이미 보증사고 이후로,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은 충분히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피고는, 위와 같이 B가 2019. 9.경의 재산분할약정금 1억 원에 상응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상당한 정도의 재산분할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보건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협의이혼 당시가 아닌 2021. 5. 21.의 재산분할약정인 점, 2021. 5.경 B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 대부분을 처분한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이는 사해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다. 무자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2017. 5. 29.경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36,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O조합의 근저당권이 2022. 8. 10. 해지되어 말소되는 등 B의 자력이 회복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를 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의 O조합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2021. 5. 21. 당시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력회복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청구에 대한 판단

따라서, 2021. 5. 21.자 재산분할약정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7. 5. 29.경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21. 5. 21.당시 이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선의 항변

피고는, 선의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신동호

별지